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. 6. 1 선고 2014가단1257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5. 4.

판결 선고 2016. 6. 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답 1,438m² 중
가.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1m² 지상 건물을
철거하고,
나.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1m²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4. 3. 25. 경기 양평군 C 답 1,438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를 매수하여 2014. 4. 3.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E 외 1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(위 건물을 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한다)을 낙찰받아 2013. 4. 12.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경계를 넘어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101㎡(이하 '별지 도면 표시 L부분'이라고 한다)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, 7호증의 각 기재,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L부분에 위치한 부분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L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F, G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(수원지방법원 2016나3352호)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, 위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설령 이 사건 건물을 F, G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이므로, 원고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라고 할 것인바, 위 건물명도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에 부족하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미주

별지